

소규모 가정주방 식품 판매 사업 안내지

EHConsultative@ph.lacounty.gov | (626) 430-5156

MEHKO 소개

2019년 1월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캘리포니아주 소매 식품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유형의 소매 식품 시설인 "소규모 가정주방 식품 판매 사업(MEHKO)"이 신설되었습니다. MEHKO는 개인 주방 시설에서 거주자가 운영하는 식품 판매 시설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거주자는 미니 레스토랑과 유사하게 주방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식품을 보관, 취급,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MEHKO는 미승인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2023년 10월 3일 슈퍼바이저 Holly J. Mitchell의 "안전성과 규제를 준수하는 자판기 및 소상공인 사업 기회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발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보건부는 카운티 변호사 및 경제적 기회 부서와 협력을 통해 다음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1. 보건부에서 MEHKO 허가를 승인하는 조례 초안 작성.
2. MEHKO를 규율하는 조례 초안이 작성되는 대로 홍보 및 이해관계자 참여 장려.
3. 가정 내 소매 식품 시설을 위한 식품 안전 관련 공공 교육 프로그램 준비.

업데이트 실행 일정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https://bit.ly/mehko-lacounty>

MEHKO의 이점

-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을 비롯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은 소규모 가정 식품 시설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내 주방 시설은 가정 기반 시설의 조리사에게 지침, 교육, 식품 안전 리소스를 제공하여 대중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관행 지식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사회, 특히 자원과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MEHKO는 소규모 이동형 식품 사업(CMFO)의 주방 역할을 수행하여 식품 노점상을 지원합니다.

MEHKO 운영 요건

- 시설을 운영하려면 공중 보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연례 점검 및 불만 기반 조사를 받습니다.
- MEHKO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 제외)은 1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 MEHKO 운영자는 공인된 공식 기관의 식품 안전 시험에 합격해 공인 식품 보호 관리자(Certified Food Protection Manager) 자격증을 취득하고 MEHKO 신청서와 함께 해당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MEHKO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된 제공업체로부터 식품 취급자 카드 인증서(Food Handler Card Certificate)를 취득하고 MEHKO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식품은 만들어지는 당일에 준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배달해야 합니다.
- MEHKO는 별도로 허용된 CMFO를 지원하도록 승인될 수 있습니다.

MEHKO 금지 사항

- MEHKO 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수량의 제한은 최대 주간 90 인분, 1 일 30 인분, 연간 총 수익 10 만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식품을 다른 식품 시설에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4367.5 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Uber Eats, Postmates, Grubhub, DoorDash 등 타사 배달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케이터링 운영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거주지에서 코티지 푸드(Cottage Food)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 프로그램의 허가 없이 알코올 또는 알코올이 함유된 식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it.ly/mehko-lacounty> 또는 커뮤니티 및 산업 참여 프로그램((626) 430-5156)으로 문의하십시오.